

—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(안)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농업기술센터 우량품종 증식포와 꽃생산 화훼포 설치 부지 매입.
- 새마을운동구미시지회 자체회관 건립부지 마련.
- 경상북도 새마을회관 건립부지(시유지) 무상양여.

3. 주요내용

【취득 및 처분재산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용 도	필수	면적(㎡)	추정가액	소유자	비고
취득재산	계	4	6,701	745,507		
	화훼포	2	5,246	115,531	선산 임종원	
	시 새마을회관	2	1,455	629,976	시유지(구특)	
처분재산	도 새마을회관	1	16,500	61,875	시유지	양여

4. 참고사항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제81조

5. 검토의견

- 농촌지도소 화훼포 단지와 벼 우량품종 증식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 새마을운동구미시지회 자체회관 건립 부지를 회계간 유상취득을 위한 토지매입과

- 사곡동 경상북도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무상 양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임.
- 지방재정법 제81조(회계간의 재산이관)에 의거 회계간 재산이관을 유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,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(국·공유재산의 대부 등) 및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시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양여, 사용·수익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저촉사항 없음.